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1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조계원·김우영·김문수

이광희 • 민형배 • 박지원

김원이 • 민병덕 • 김 윤

양문석 • 임오경 • 주철현

박정현 • 박민규 • 문금주

채현일 • 이훈기 • 유준병

양부남 · 김영환 · 박희승

이기헌 · 권향엽 · 박홍근

박용갑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 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등)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항을"을 "사항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의3. 제12조의4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8의4. 제12조의5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 한 사항

2의3. 제12조의4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의4. 제12조의5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 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

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 다.

-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의3(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2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 제12조의4(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5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 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 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5(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 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 던 것으로 본다.
-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 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 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 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

에는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 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
회) ① 여수・순천 10・19사건	ই)) ①
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u>사항</u>	<u>사</u> 항
<u>을</u>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	<u> 등 을</u>
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	
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2
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실종선</u>
	고 청구에 관한 사항
<u><신 설></u>	<u>8의3. 제12조의4에 따른 사실상</u>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u><신 설></u>	<u>8의4. 제12조의5에 따른 사실상</u>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
	<u>ठ</u>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	제4소(여수·순전 10·19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 2. (생략)

<신 설>

<u><신</u> 설>

<신 설>

3.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 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

2의3. 제12조의4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의4. 제12조의5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 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 항

- 3. 4.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선고는 「민법」 등 관 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 제12조의3(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
 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 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 ③ 제12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 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

<신 _설>

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 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 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2조의4(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5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 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 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

<신 설>

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12조의5(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 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 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 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 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 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 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 <u>람은 종전의 「민법」(199</u>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 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 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 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